

예 산 총 칙

2018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19,497,592	18,584,928
일반회계	555,955,744	16,678,672
특별회계	63,541,848	1,906,255
공기업특별회계	33,686,871	1,010,60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3,686,871	1,010,606
기타특별회계	29,854,977	895,649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93,677	20,810
자활기금특별회계	2,236,477	67,094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905,914	27,17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4,428	2,233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215,920	6,478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1,415,411	42,462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35,580	4,067
수질개선특별회계	24,177,570	725,327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1,000,000천원으로 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10,403,848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4,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9 조 금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연말까지 교부된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승인(명시이월 포함)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